

소셜미디어와 1인 미디어의 부상으로 인한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의 확대 가능성

- 유튜브 저널리즘을 중심으로 -*

권 형 둔**

공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법학박사

국문 초록

소셜미디어와 1인 미디어로 대표되는 유튜브가 세상을 바꾸고 있다. 유튜브와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신문이나 방송과 같은 전통적 미디어를 대체하고 있고, 이제는 이를 압도하고 있다. 모바일 중심의 미디어 환경으로 이행하면서 유튜브 뉴스가 급성장하게 되었고, 이제는 ‘유튜브 저널리즘’이라는 용어도 사용되고 있다. 미디어 영향력과 사회적 파급력이 커지면서 유튜브를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문제가 발생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유튜브가 사회적 의제를 형성하고 공적 토론을 자극하는 등 실제로 저널리즘 기능을 수행하는 이상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다. 한국 사회에서 언론중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언론중재위원회의 현대적인 조정·중재 기구에 의한 비소송적 분쟁 해결 방법은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다. 다른 조정·중재 기구와는 달리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 보호라는 두 법익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는 대표적 기관이기 때문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해 매체 환경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연

* 이 연구는 2024년 언론중재위원회 토론회 “유튜브 저널리즘과 인격권 침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학술대회 및 심사과정에서 유용한 의견을 주신 토론자 및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morgen@kongju.ac.kr

구에서는 유튜브 저널리즘에 의한 인격권 침해 구제수단으로서 현행 대응체계의 한계를 살펴보고, 입법 개선 방안으로 언론중재법의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해외 국가들도 소셜미디어나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자율 규제 의무에서 강제 조치를 도입하는 추세에 있고, 이러한 외국의 입법 동향은 유튜브 규제와 관련하여 우리의 입법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디지털 융합 현상 속에서 헌법상 방송이나 언론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사회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미디어 현상의 변화를 입법 과정에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주제어: 소셜미디어, 유튜브 저널리즘, 디지털서비스법, 네트워크법집행법, 통신법위법, 언론중재법

목 차

- I. 문제 제기
- II. 유튜브 콘텐츠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대응 체계와 규제의 헌법적 한계
 - 1. 현행 대응체계와 유튜브 규제의 헌법적 한계
 - 2.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유튜브 콘텐츠 규제
- III. 유튜브 콘텐츠 대응을 위한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 1.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
 - 2. 독일의 네트워크법집행법
 - 3. 미국의 통신품위법 및 인터넷 플랫폼 책임 및 소비자 투명성법(안)
 - 4. 결어
- IV. 한국에서 유튜브에 대한 대응 : 언론중재법의 확대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 1. 국회 제출 언론중재법 개정 법안 검토
 - 2. 유튜브에 대한 언론중재법의 적용 가능성
 - 3. 유튜브 적용을 위한 법 개정 시 선결과제
- V. 마무리

I. 문제 제기

「감시자본주의 시대」의 저자 쇼사나 주보프(Shoshana Zuboff)는 유럽 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이 통과된 직후 파이낸셜타임즈 기고문에서 “민주적 권리와 법의 지배라는 합법적인 권력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미래를 위한 첫 번째 포괄적 선언이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김익현, 2022, 16쪽).

미디어 기술의 혁신과 미디어 채널의 증가로 표현의 자유의 영역은 확장되고 있지만, 혁신적 플랫폼이 가져온 풍성한 보상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다.¹⁾ 새로운 디지털 체제의 플랫폼에서는 개인이 가

진 욕구가 충족되는 매 순간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데이터로 추출되어 상품화되어 나간다.

소셜미디어와 1인 미디어로 대표되는 유튜브가 세상을 바꾸고 있다. 페이스북(Facebook), 엑스(X, 구 트위터), 인스타그램(Instagram), 틱톡 등 소셜미디어와 유튜브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주체가 뉴스를 생산하고 배포하는 소셜 저널리즘이 확산되고 있다(설진아·전승, 2022, 48쪽). 전통적인 언론매체는 뉴스 생산과 유통을 위해 소셜미디어를 취재 원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유튜브와 소셜미디어가 신문이나 방송과 같은 전통적 미디어를 대체하고 있고, 이제는 이를 압도하기 시작한다.

특히 영상을 보는 플랫폼에 불과했던 유튜브는 실생활의 활동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는 곳으로 그 영향력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영상 기반에서 모바일로 시청하는 미디어 환경으로 이행하는 과정에 유튜브 뉴스가 급성장하면서 ‘유튜브 저널리즘’이라는 용어도 사용되고 있다. 유튜브 저널리즘이 학문적으로 명확히 정의되지는 않았지만, 현상적으로는 뉴스 수용자들이 유튜브에서 ‘저널리즘’을 소비하고 있다는 판단의 결과로 보인다.

옥스퍼드대학교 부설 ‘로이터저널리즘’ 연구소의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5」에 따르면 한국인의 50% 이상이 유튜브로 뉴스를 이용하고 있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25). 연령대별로는 50대가 61%로 가장 높고 60대 이상 53%, 40대 48%, 20대 44%, 30대 32%로 중장년층 이용률이 높다.²⁾ 뉴스의 유통 경로가 변경되면서 일반 국민이 신뢰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콘텐츠 형식도 재구성되고 있다. 수년 전만 해도 뉴스의 관문이 되었던 포털의 지위는 약화되고 있으며, 이로부터 이탈한 뉴스 소비자는

1) 최근에는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텔레그램 등에서 160억 개에 이르는 사용자 로그인 정보가 유출됐다는 분석이 나와 사용자들이 비밀번호를 바꾸어야 한다는 권고가 나오기도 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it/1203973.html>>

2) 이는 젊은 세대가 틱톡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새로운 플랫폼으로 이동한 반면에 중장년층은 유튜브를 뉴스 소비 채널로 적극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국내 유튜브 뉴스 보수 이용자는 증가(58%→63%)한 반면에 진보 이용자는 감소(52%→43%)한 점도 이례적이다.

소셜미디어나 유튜브로 옮겨갔다.

유튜브의 미디어 영향력과 사회적 파급력이 커지면서 전통적 언론과 마찬가지로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박아란, 2024, 83쪽). 신문이나 방송과는 다른 특성이 있지만, 저널리즘을 표방하는 유튜브의 경우 여론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법적 규제의 틀 안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³⁾

표현의 자유를 찾아 유튜브 저널리즘으로 이동한 자들이 공유하는 정보를 규제의 대상으로 삼는 일은 헌법적 문제를 야기한다는 주장도 있지만(장철준, 2025), 사회적 의제를 형성하고 공적 토론을 자극하는 등 실제로 저널리즘 기능을 수행하는 이상 유튜브에 대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다(김주용, 2025; 이승선, 2025). 유튜브는 허위 정보나 명예훼손적 콘텐츠 확산에 가장 용이한 매체의 하나가 되었으며, 또한 여론의 다양성을 훼손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자는 당위성이 힘을 얻어가고 있다(양선희, 2020).⁴⁾ 뉴스의 이용이 많은 인터넷 공간에서 언론중재법이 인격권 침해로부터 피해구제에 실효성을 갖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매체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튜브 저널리즘에 의한 인격권 침해 구제 수단으로서 현행 대응체계의 한계와 함께 입법 개선 방안으로 언론중재법 적용의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유튜브 뉴스 콘텐츠 규제에 대한 헌법적 한계와 함께 외국의 입법례를 통해 어떠한 법적 지위를 갖는지와 우리나라 법제에 대한 시사점, 그리고 유튜브 뉴스 콘텐츠를 언론중

3) 2024년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전·현직 언론인들이 운영하는 시사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63.5%가 언론으로 인식하고 있고, 개인 운영 유튜브 채널의 뉴스 형태 콘텐츠에 대한 피해구제에 대해 신청인의 93.8%, 피신청인의 73.8%가 필요하다고 답한 바 있다.

4)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 73.6%가 유튜브와 SNS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식을 접하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 반면에 TV 방송은 15%, 속보 알림은 7%에 불과하였다. 이에 대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건은 부정선거 음모론과 같이 잘못된 여론 형성이 영향을 미친 유튜브의 역기능을 보여주고 있다.

재법상 조정·중재의 대상에 포섭할 경우 구체적 입법 방안과 선결 과제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II. 유튜브 콘텐츠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대응체계와 규제의 헌법적 한계

1. 현행 대응체계와 유튜브 규제의 헌법적 한계

유튜브에서 발생하는 인격권 침해 형태는 다양하다.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초상권 무단 사용, 허위 사실 또는 음란물 유포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러한 문제들은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다. 언론보도를 통해 유튜브 방송의 선정적·폭력적·반사회적 콘텐츠로 인한 문제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수익이나 인기를 얻기 위해 유해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다. 일부 정치인들이 편승하기도 한다. 플랫폼 사업자는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제재하지 않는다.

전통적으로 ‘방송’은 주파수의 희소성·침투력·공공성·보편적 서비스·소비자 보호·공동체 유지 등을 이유로 규제를 받아왔다. 방송법적 규제를 받는 ‘방송’은 공적 책임과 사전심의 및 편성 규제의 대상이 되지만, 유튜브는 현행법상 정보통신의 영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4호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전기 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유튜브 개인 방송심의는 일반인 신고와 자체 모니터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접수된 신고 중 통신 심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없음’으로 시정요구나 자율규제 권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임한솔·정창원, 2020, 252쪽).

강제력 있는 제재가 아닌 통신심의를 하더라도 플랫폼 사업자를 통해 해당 콘텐츠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조치, 그리고 문제가 된 콘텐츠를 올린 이용자의 계정 해지 및 정지가 전부이다. 유튜브에서 사실 또는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인격권 침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초상권 침해의 경우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유튜브 댓글이나 영상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경우에는 형법 제311조상 모욕죄 처벌이 가능하다. 모욕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유튜브의 경우 콘텐츠에 대한 저장 의무가 없어 증거자료로 삼는 것도 어렵고, 스트리밍으로 방송된 콘텐츠가 유튜브에 업로드되었을 때 크리에이터를 제외하고 심의 대상 사업자를 특정할 수 없게 되어 시정요구 결정을 내리는 것도 곤란하다.

유튜브는 자체 이용약관을 통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해당하는 불법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이를 신고하고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러한 자율규제로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다. 이용자들이 직접 해당 콘텐츠를 신고하면 유튜브는 이를 검토하고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에 따라 콘텐츠 삭제나 채널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인격권 침해와 같은 심각한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법적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해당 콘텐츠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삭제 조치도 가능하다. 그러나 불법 정보의 기준이 모호하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이유로 수많은 콘텐츠를 일일이 검열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디지털 융합 현상은 전통적인 방송과 통신이론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요구한다. 인터넷 기술 발달로 유튜브는 공공의 의사형성에 밀접

한 관련성을 갖는 유사방송으로 그 영향력과 침투성을 인정받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방송통신융합 현상에 따라 통합법 체계를 마련하여 수평적 규제체계를 갖추어가고 있다. 하지만, 콘텐츠와 네트워크의 경계가 불분명해짐에 따라 융합의 개념보다 분화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즉, 방송과 통신의 이분화된 규제체계에 더하여 유튜브 저널리즘에 대해서는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전통적 의미의 방송과 유사방송의 역할을 하는 저널리즘 특성의 유튜브, 그리고 통신 부분의 유튜브와 같이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과 전파의 특성을 고려한 규제체계의 정립이 필요한 것이다.

헌법이 방송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립하지 않은 이유는 이미 도입되어 있는 기술에 한정된 개념이 아니라 다양한 미디어 서비스를 포섭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 제21조 제3항이 “통신과 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매체 특성에 맞는 규제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입법자의 의무라는 의미이다 (권형돈, 2019, 15-16쪽).

따라서 헌법상 개념으로서의 방송이나 언론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과 함께 사회 영역에서 일어나는 실질적 매체 변화를 입법 과정에 수용할 필요가 있고, 이 경우 유튜브는 그 매체적 특성에 따라 방송과 통신의 중간 영역인 유사방송으로 규율될 수 있다. 즉 입법자는 언론의 자유가 국가권력이나 다양한 사회세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입법 형성의 재량을 갖고 매체 특성에 맞는 실체적인 규율을 하면 된다.⁵⁾

2.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유튜브 콘텐츠 규제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인간존엄성과 가치 존중에 뿌리를 둔 기본권으

⁵⁾ 헌재 2003.12.18. 선고 2002헌바49 결정

로 사실에 입각한 의사소통과 문화적 가치 및 윤리적 틀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국가권력이 사전에 내용을 검토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검열은 표현의 자유와 양립될 수 없다. 사전검열을 수단으로 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표현의 내용에 대한 사후제제도 원칙적으로 중대한 공익 실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하지만, 그 제한 입법은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권형돈, 2020).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의사 표현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며, 인터넷 등 온라인 매체도 의사형성적 작용을 하는 한 의사를 표현하고 전파하는 형식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해 유통될 목적으로 제작되는 모든 정보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 된다.⁶⁾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보를 선택하는 필터링(filtering) 기능은 표현의 자유의 가치 보호를 위해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인터넷 포털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를 수집하여 필터링하여 제공하고 있고, 그 내용과 방법에 대한 결정은 플랫폼 사업자가 선택한 알고리즘으로 결정된다. 사업자는 자신이 선택하고 지시한 내용을 중개하기 위하여 선택과 평가 결정을 하는 것이다. 때로는 사업자의 다양한 의도에 맞추어지고 의사의 다양성 측면보다는 상업적 이해관계 등의 요인으로 정보의 왜곡이 발생하기도 한다(이부하, 2018, 45쪽).

인터넷을 활용한 새로운 의사 표현의 대표적인 수단이 소셜미디어와 유튜브 방송이다. 소셜미디어는 저렴한 비용으로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참여적인 매체이자 표현의 쌍방향성이 보장되는 인터넷의 특징이 그대로 나타나는 표현 수단이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되는 소셜미디어의 신속성, 확장성, 복제성이라는 특성상 사생활 보호 등 기본권에 대한 법익 침해는 더 커질 수도 있다(문재완, 2012, 125쪽). 이에 대해 유튜브 방송은 불법 음란물이나 거짓 정보, 혐오 표현 등의

⁶⁾ 헌재 2004.1.29. 선고 2001헌마894 결정

온상이 되고 있어 문제가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튜브 방송이 언론중재법상 조정·중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언론의 개념은 어느 범위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도 논란이 된다.

전통적 미디어에 대한 규제 논리를 유튜브 등에 확장하여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장철준, 2025; 황성기, 2017, 4쪽). 전통적 미디어와 명확히 구분되는 새로운 미디어에 대해 동일한 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이른바 가짜뉴스의 온상이 된 유튜브 방송은 기성 언론의 책임과 역할 수행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이다.

그렇지만 온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허위 정보를 나르고 혐오를 조장하여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임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상반된 의견의 배경에는 표현의 자유의 법리를 이해하는 각국의 문화적 차이점에 기인한 것이라고 본다. 개인정보보호나 혐오 발언에 대한 제재를 더 중요하게 간주하는 유럽 각국의 문화적 특성은 디지털 서비스법의 제정으로 이어졌다(이성엽, 2024, 6쪽).⁷⁾ 다양한 미디어 형태에서 표현의 자유를 이해하는 시각은 각국의 법 전통과 가치 또는 이를 이해하는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다르다.

인터넷 기반 플랫폼 서비스가 전통적 미디어를 압도하는 영향력을 갖게 되면서 부작용도 함께 커지고 있다. 자칫 표현의 자유의 퇴행을 가져올 수 있는 지배적 의사의 과도한 집중과 그 남용에 대해 누구도 책임 지지 않고 있다. 직접 민주주의의 장점보다는 사회 갈등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훨씬 크다는 공감대도 확산되어 가고 있다. 유튜브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각국의 법과 규제가 다르게 적용될 수밖에 없고, 그 활동이 온라인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응에도 한계가 있다. 소셜미디어와 마찬가지로 빠른 속도로 확산하는 특징이 있으므로 법적 대응도 복잡하다. 특히 유튜브 방송은 개인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중

7) 디지털 서비스법의 제정 취지는 “오프라인에서 불법은 온라인에서도 불법이다 (What is illegal offline should also be illegal online)”는 것이다.

요한 수단도 되기 때문에, 과도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유튜브 규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과 함께 다른 기본권적 법익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디지털 융합 현상은 미디어 이론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법 제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Ⅲ. 유튜브 콘텐츠 대응을 위한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1.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

가. 법의 주요 내용

2022년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법인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DSA, Digital Service Act)을 제정하여 2023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⁸⁾ 동법은 정보를 중개·유통하는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는 법이다.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통하여 이용자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여 디지털 서비스 산업의 긍정적인 발전을 유도한다는 내용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다.⁹⁾

동법은 전문과 5개의 장(Chapter) 및 74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8) DSA는 2022. 7. 의회의 최종 승인이 있은 후 2023. 4. 선제 규제 대상 19개를 발표한 데 이어 2023. 8. 25. 시행된바, 우선적으로 거대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와 검색엔진만을 대상으로 시행된 것이며, 2024. 2. 부터는 규모와 관계없이 EU의 디지털 서비스사업자들에게 적용되고 있다.

9) 디지털서비스법은 2020년부터 논의를 시작하여 2022년 4월 2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EU 의회 회의에서 제정에 합의하였다. 그 결과, 동법은 EU 회원국 27개국과 유럽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EU는 DSA 입법이 역내 모든 국가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회원국에 직접적인 효력을 갖는 규칙(Regulation)의 형식으로 제정하였다.

제1장 일반조항, 제2장 플랫폼 사업자의 면책조항, 제3장 투명하고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위한 주의의무, 제4장 규칙의 시행 및 집행, 제5장 규칙의 평가·발표·적용 등에 관한 조항이다. 특히 제3장에서는 중개 서비스사업자, 호스팅 서비스사업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등의 의무에 관한 내용으로 법의 적용 대상을 4가지 사업자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이권일, 2024, 17쪽).¹⁰⁾ 그리고 정보를 중개하는 플랫폼 사업자에 불법 정보의 유통에 대한 책임을 각 서비스 유형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한다.

주요 내용으로 첫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투명성 보고의무와 연락처 및 법적 대리인 지정 의무가 부과된다. 둘째, 불법 콘텐츠 삭제로 호스팅 서비스사업자는 불법 콘텐츠 신고 메커니즘 구축 의무가 부과되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판매자 신원확인을 할 의무가 있다. 셋째, 투명성 강화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분쟁 관련 정보, 콘텐츠 조정을 위해 사용된 자동화 수단 관련 정보, 타깃 광고에 사용된 주요 매개 변수 등 온라인 광고 관련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 모든 중개 서비스사업자는 이용 조건에 콘텐츠 조정을 위한 정책·절차·조치·수단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하며, 연 1회 보고서를 발간해야 한다. 넷째,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

10) 중개 서비스(Intermediary services)는 네트워크 인프라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인터넷 접속 서비스나 도메인이름 등록서비스와 같이 통신네트워크에서 서비스 수신자가 제공하는 정보 전송 또는 통신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단순전달자(mere conduit)’ 서비스 또는 요청이 있는 경우 통신네트워크에서의 전송으로 구성되는 ‘캐싱(caching)’ 서비스 등을 의미한다. 호스팅 서비스(Hosting service)는 이중 이용자의 요청으로 정보 저장이 이루어지는 저장·전달서비스를 주로 하는 클라우드서비스나 웹호스팅 서비스를 의미한다. 온라인 플랫폼은 “서비스 수신자 요청에 따라 공개 정보를 저장 및 배포하는 호스팅 서비스의 제공자를 의미한다. 앱스토어, 공유경제 플랫폼, SNS나 온라인 마켓 등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온라인 플랫폼 중 EU 지역 내 월평균 4천5백만 명 이상 유효 서비스 수신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제공업체를 의미한다. 알리바바,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인스타그램, 틱톡, X, 유튜브 등이 이에 해당하며 검색서비스로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Bing, 구글 서치가 이에 해당한다.

화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지만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의무를 부과한다. 구체적으로는 ① 불법적인 내용 전파를 통한 서비스의 불법적 이용행위의 위험성을 방지해야 한다.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콘텐츠, 혐오 표현의 불법 전파, 위조품 등 법률이 금지하는 상품과 서비스 제공이 이에 해당한다. ② 표현의 자유, 정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아동의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부정적 위협의 방지 의무가 있다.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에서 알고리즘 기반의 시스템 설계로 인한 문제도 방지해야 한다. ③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의도하거나 설계된 제공의 위험도 방지해야 한다. 공공질서 및 사생활의 보호와 연관되고 사기적·기만적인 상업적 관행으로 인한 위협을 방지해야 한다. ④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통상의 온라인 플랫폼보다 더 엄격한 투명성 의무를 부여한다. 추천 시스템의 중요 매개 변수를 공개해야 하며, 온라인 광고의 투명성 강화, 데이터 접근과 조사 허용, 주기적인 투명성 보고의무가 포함된다(곽정호, 2023, 70-71쪽). 디지털 서비스법의 강력한 규제 대상으로 아마존, 애플, 메타, 틱톡, 유튜브 등 글로벌 플랫폼을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으로 지정하여 의무를 부과한다.

나. 분석 및 시사점

디지털서비스법은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업무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단순히 전자상거래 지침의 개정이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전반의 운영 방식에 걸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규제체계를 확립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플랫폼의 콘텐츠 조정, 온라인 광고 및 추천 시스템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이용자가 추천 시스템의 주요 매개 변수를 변경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AI 알고리즘이 적용된 추천 시스템은 이용자가 다양한 관점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의사결정 능력을 퇴화시킨다는 비판이 있다(김현수·전성호, 2020, 32-33).

다음으로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온라인 서비스사업자에 대해 임시 조치의 명령 등 강력하고 효과적인 규제가 가능하고, 플랫폼을 더럽히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 중단을 의무화한 것이다. 불법 콘텐츠를 제공하는 이용자의 경제적 수익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이성엽, 2025, 7쪽).¹¹⁾ 더 이상 온라인에서 관용과 예외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일관적 원칙을 적용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약관에 정책 및 수단을 명시하고, 내부 불만 처리 시스템 구축, 법정 외 분쟁 해결 등 실효적인 분쟁해결절차를 마련하여 불법 콘텐츠 신고 및 삭제와 콘텐츠가 삭제된 이용자 권리 보호를 균형 있게 추진하였다는 점은 시사점으로 삼을 만하다.

2. 독일의 네트워크법집행법

가. 법의 주요 내용

2017. 6. 30.에 연방의회를 통과하여 2017. 10. 1.부터 발효된 「네트워크법집행법」(NetzDG)은 총 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법은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등에서 이루어지는 혐오 표현과 허위 정보의 억제에 입법 목적이 있다(권형돈, 2020, 16-21).¹²⁾

11) 디지털 서비스법은 삭제·차단의 대상이 되는 ‘불법 정보’ 또는 ‘불법 콘텐츠’를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해당 범물의 정확한 주제 또는 성격과 관계없이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을 포함하여 그 자체로 또는 그 활동과 관련하여 EU법 또는 회원국의 법률을 준수하지 않은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라고 하여 불법 정보 또는 불법 콘텐츠에 관한 정의를 EU 및 회원국 개별법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정보통신망법에서 9가지의 불법 정보의 유형을 정하면서 특히, 성범죄물에 대해 특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에 EU는 법을 위반한 정보를 모두 불법 콘텐츠로 보고 있다.

12) 네트워크법집행법(Gesetz zur Verbesserung der Rechtsdurchsetzung in sozialen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독일 국내에 등록된 이용자 수가 2백만 명 이상의 네트워크 서비스사업자는 보고의무와 이의제기 처리 의무를 부과 받는다. 독일 형법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불법 게시물은 서비스사업자가 저널리즘 원칙에 따라 편집한 게시물이나 책임을 져야 하는 게시물이 있는 플랫폼과 개인 간의 소통이나 특정 내용을 배포하기 위해 만든 플랫폼에서 배제해야 한다. 둘째, 불법 게시물로 한 해 100건 이상 이의제기를 받은 서비스사업자는 처리 실태에 대해 기간 내에 공지할 의무가 있다. 셋째, 불법 게시물에 이의제기가 있을 때는 서비스사업자는 즉시 절차에 따라 처리 또는 삭제해야 한다. 불법임이 명확한 게시물에 대해서는 24시간 이내에 삭제 또는 차단해야 하며, 명확하지 않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조치해야 한다. 넷째, 서비스사업자는 독일 내에 송달 대리인을 플랫폼에 명시해야 한다. 다섯째, 서비스사업자가 보고의무, 이의제기 처리 절차, 조직상 결함의 시정 의무 등을 위반한 때에는 5백만 유로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2021년에는 극우주의와 혐오범죄 대처법(Gesetz zur Bekämpfung des Rechtsextremismus und der Hasskriminalität)이 제정되면서 독일 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었고, 유럽연합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지침(Richtlinie über audiovisuelle Mediendienste, AVMD-RL)이 개정되면서 영상공유플랫폼상의 불법 콘텐츠 대책을 위한 의무가 강화되었다. 극우주의와 혐오범죄 대처법에 따른 서비스사업자의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네트워크법집행법도 개정되었다. 개정 주요 내용은 첫째, 법 제3a조에 사업자의 신고 의무를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는 형사 범죄 기소를 목적으로 콘텐츠를 연방범죄청에 전송해야 한다. 둘째,

Netzwerken) 제정 당시 독일 사회는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난민의 증가로 인종 차별적 게시물과 함께 난민과 이민자에 대한 적대적인 표현의 수위가 높아지고, 이를 악용한 극우세력이 발호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다. 이에 난민에 대한 혐오·증오 표현에 대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인종 차별적 발언이나 혐오 표현의 생산·유통·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이 법이 제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용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도입하였다. 게시물이 삭제되었거나 적법하지 않게 신고된 경우 이용자를 위해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셋째, 중재기관의 설치 규정을 신설하였다. 제3c조는 중재(Schlichtung)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신고자나 위반 콘텐츠 이용자와 서비스사업자 간의 재판 외의 분쟁 해결을 위해 사법적(私法的)으로 조직된 기관(privatrechtlich organisierte Einrichtungen)을 중재기관(Schlichtungsstellen)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민간 중재 기구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 조건 및 처리 절차, 중재 규정을 법률에 규정하도록 하였다.

동영상 공유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민간 중재 기구가 아닌 행정기관을 중재기관으로 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 법 제3f조는 동영상 공유플랫폼 서비스 분쟁에 대해서는 행정청에 의한 중재(Behördliche Schlichtung für Streitigkeiten mit Videosharingplattform-Diensten)로 되어야 하며, 감독기관인 법무부가 설치한 중재기관이 중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법률상의 조건을 갖추게 되면 감독기관은 이를 규제된 자율규제 기구(Einrichtung der Regulierten Selbstregulierung)로 인정하도록 하였다.

나. 분석 및 시사점

네트워크법집행법은 불법 게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차단 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독일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혐오 표현과 허위 정보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동법은 허위 정보에 대한 대응과 함께 독일의 역사적 경험으로 인종차별과 난민에 대한 혐오 조장의 심각성 때문에 제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법 제정 당시에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가능성과 사기업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사적 검열을 허용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이유로 야당은 물론 정부 내에서도 반대가 심했다. 즉 공권력의 행사로 국민의 권리의무 관계에 직접적인 변화가 아니라, 서비스사업자가 이용자의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차단하도록 공권력이 강제하는 규제된 자율규제(regulierten Selbstregulierung)의 방식으로 실질적 규제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심영섭, 2024).

2019년 페이스북은 보고의무 이행 규정 위반으로 200만 유로의 벌금, 2021년 불만 제기 절차 규정 위반으로 3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받았고, 2023년 텔레그램 메신저도 페이스북과 유사한 혐의로 두 차례에 걸쳐 512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2023년 상반기에 유튜브와 X의 투명성 보고서를 보면 유튜브는 총신고 193,131개 중 30,870개에 대한 삭제 등의 조치를 하였고, X가 총신고 1,101,456개 중 267,421개를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삭제나 차단 조치된 콘텐츠 대부분이 24시간 내 처리된 것으로 파악됨으로써 플랫폼 사업자들이 신고된 콘텐츠에 대해 신속하게 규제함으로써 실제로 강력한 집행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권형돈, 2020).

독일의 네트워크법집행법은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는 치욕스러운 법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공론의 장을 만드는 데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개정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우려를 반영하여 이용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삭제된 게시물 복원을 위해 법원의 강제절차를 도입하기도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언론중재위원회와 같이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 해결을 위한 중립적인 중재위원회 제도도 도입하였다. 신고당한 자의 이의제기 절차, 신고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함께 규정하여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제3의 기관에 의해 재심을 받도록 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공권력에 의한 내용물 심사에 대한 우회로로 플랫폼 사업자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사업자가 과잉 대응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네트워크법집행법을 위반한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독일 정부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각국에서는 독일의 영향을 받아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는 법을 제정하였으며, 마침내 유럽연합 차원에서 디지털서비스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디지털서비스법 제정으로 중복되는 규정은 폐지되고 현재는 별칙 조항만 남아 있다. 범유럽 감독 기구에 의해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은 EU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는다. 규정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반복해서 위반할 시 EU 내 영업 금지 조치도 내릴 수 있다. 중소 규모 플랫폼에 대해서는 각 회원국에서 감독하며,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Digital Services Coordinators)을 통해 EU 차원에서 협력을 이어간다. 네트워크법집행법에서 문제가 됐던 원산지원칙을 넘어 역내에는 단일법을 적용하여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회피를 방지하고 있다(이유진, 2023).

3. 미국의 통신품위법 및 인터넷 플랫폼 책임 및 소비자 투명성법(안)

가. 법의 주요 내용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는 “의회가 언론 및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보장하고 있다(Katsch, 1989, 57쪽).¹³⁾ 제한이 절대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지만,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고 두텁게 보장되는 기본권이다(임지봉, 2006). 소셜미디어나 유튜브 규제는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는 자유롭게 콘텐츠를 생성하고 의견 표명이 가능하도록 신중한 태도를 보여오고 있다. 현재 법적으로는 구글·메타·트위터 등 미국의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상 게시물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1996년 미국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의 적용을 받고 있다. 동법 제230조는 “양방향 컴퓨터 서비스의 제공자나 사용자는 다른 정보 콘텐츠 제공자가 제공한 정보의 발행자나 발화자로

13) 물론 미국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장 법리는 미국 헌법제정 당시 커뮤니케이션 환경과 헌법 제정자들의 경험에 기인한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간주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¹⁴⁾ 이는 단순히 콘텐츠를 공개하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발행자’(publisher)에 준하는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데 통신품위법 제230조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플랫폼 사업자는 소셜미디어나 유튜브 등에서 불법 콘텐츠 유통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고 부담 없이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그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하지만 불법 콘텐츠와 혐오 발언 등과 관련하여 사업자들이 법적 면죄부로 악용한다는 비판에 개정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면책을 중단하고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대해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접근을 보장하는 조항을 통신품위법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21세기 표현의 자유법(안)이 제안되기도 하였다. 또한 예외적으로 플랫폼 사업자가 콘텐츠 제공자로서 기능하거나, 통신법·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아동보호법의 경우에는 통신품위법상 면책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기도 한다.

연방의회는 2023년 2월 16일 소셜미디어 사업자에게 유해 정보 차단과 관련된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 플랫폼 책임 및 소비자 투명성법(안)」(Internet Platform Accountability and Consumer Transparency Act)을 발의하였다.¹⁵⁾ 법안은 「통신품위법」에서 보장하는 소셜미디어 기업의 면책특권 조항을 개정하여, 소셜미디어 회사가 명확한 콘텐츠 조정 정책을 수립하여 사용자 보호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플랫폼 사업자의 투명성 강화, 콘텐츠 조정 책임, 사용자 보호의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최서지, 2023).

첫째, 투명성 강화를 위해 플랫폼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해 콘텐츠에 대해서는 아이디를 삭제하고 수익 창출을 중단하는 등 콘

14) 통신품위법은 소셜미디어를 ‘양방향 컴퓨터 서비스(interactive computer services)’라고 규정하는 데 반해, 주 정부는 소셜미디어 기업, 온라인 플랫폼 기업 등의 용어로 혼용하고 있다. 구별의 기준은 불분명하다.

15) <<https://www.congress.gov/bill/118th-congress/senate-bill/483/text>>

텐츠 조정 정책을 설명하도록 한다. 또한 계정 삭제, 수익 창출 중단 또는 알고리즘 제외 콘텐츠에 대한 통계 등을 세분화하여 연방 규제기관에 2년마다 보고하도록 한다. 국립표준기술연구소는 자율규제체계를 만들어 소셜미디어 사업자와 정부의 협업을 촉진하여야 한다.

둘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21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통보하도록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 사용자가 콘텐츠 조정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도록 불만 접수 시스템을 정비하여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법원에서 결정된 불법 콘텐츠 및 활동에 대해서는 4일 이내에 삭제하도록 「통신망법」 제230조를 개정하도록 한 것은 콘텐츠 규제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 이에 대해 소규모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규모에 따라 사용자 불만 대응과 불법 콘텐츠 제거 및 대처에 있어서 유연성을 허용하고 있다.

셋째, 플랫폼 서비스 사용자 보호를 위해 법무부나 연방거래위원회 등 연방 규제기관은 온라인상 유해 정보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플랫폼 사업자가 「통신망법」을 방어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회계 감사원(GAO)은 플랫폼 사업자의 직원이나 계약자가 콘텐츠 조정에 있어 부적절한 사례를 신고할 때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관리하는 내부고발자에 해당하는지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나. 분석 및 시사점

통신망법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유튜브에서 불법 콘텐츠와 혐오 발언, 가짜뉴스 등을 방치할 수 있도록 법적 면죄부를 주었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미국 수정 헌법상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해 긍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이성엽, 2025).

하지만 미국에서도 유튜브가 불특정 다수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불법 정보 차단을 위해 자율규제와 강제 조치를 병행하여 이를 사전에 차단하려 시도하고 있다. 트럼프 지지자들이 2021년 연방의회 의사당을

난입한 사건과 관련하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 유튜브 등은 폭력 선동의 위험성을 이유로 트럼프의 개인 계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소셜미디어 사업자들의 이러한 조치는 표현의 자유 보장과 관련하여 엄청난 논란을 일으켰다.

폭력을 선동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위험한 게시물을 차단하는 것은 플랫폼 기업의 합리적이고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에서부터 법적 권한이 없는 사기업이 공직자의 개인 계정을 차단하는 것은 사적 검열이라는 입장까지 다양하다(박아란, 2023, 51쪽). 이후 미국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과 통신품위법의 면책 규정 적용에서 제외되는 법안 추진과 함께 각 주에서 소셜미디어 사업자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법이 제정되기 시작하였다.

뉴욕주의 증오행위법(Hateful Conduct Law)은 소셜미디어 플랫폼 사업자로 하여금 증오행위를 신고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증오행위는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소셜미디어 네트워크를 사용한 특정 계층에 대한 비방, 모욕, 폭력 선동 등으로 광범위하게 정의된다(최서지, 2023).¹⁶⁾ 또한 캘리포니아주는 2022년 9월 13일 소셜미디어 콘텐츠 조정의 투명성 보장을 위하여 소셜미디어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강조하는 「소셜미디어 기업법」(Social Media Companies Law)을 제정하여 사용자의 이용 행태를 규정하는 약관을 통해 규제 물질의 불법유통과 폭력적인 게시물을 규제하고 있다. 플로리다와 텍사스주는 2021년 소셜미디어법을 제정하여 소셜미디어 사업자의 자의적인 삭제 권한을 제한하고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트럼프 2기 정부는 표현의 자유 보호를 강화한다는 입장이지만, 그가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으로 지명한 브렌던 카(Brendan Carr)는 통

16) 법적으로 ‘증오행위’는 정부 정책에 명확한 근거가 있는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 발언을 규제하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따라, 법률상 효력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https://storage.courtlistener.com/recap/gov.uscourts.nysd.590358/gov.uscourts.nysd.590358.29.0.pdf>〉

신품위법 제230조 상 플랫폼 사업자의 면책과 플랫폼의 콘텐츠 자율규제에 대해 일정 부분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 조항을 이용해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견을 억제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트럼프 정부는 표현의 자유 보호를 강화하려는 입장이지만, 전통적인 보수주의 수호를 위해 빅테크에 대한 압박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다(이성엽, 2025). 하지만 소셜미디어 사업자의 자율규제 의무와 강제 조치에 대한 입법 동향은 유튜브 유해 정보 규제 관련 입법 논의에 참고할 만하다고 본다.

4. 결어

유튜브에서 테러를 예고하고 유해 정보를 생중계하는 사건 등이 발생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부정선거 등 가짜뉴스에 기인한 서부 지방법원 난입 사건은 유튜브 콘텐츠 규제의 필요성을 일깨워준다. 소셜미디어에서 가짜뉴스, 혐오 표현 등 불법 유해 정보는 불특정 다수에게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만, 그 규제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주요 국가들은 소셜미디어나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자율규제 의무에서 강제 조치를 도입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입법 동향은 유튜브 규제와 관련하여 우리 입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 전반의 운영 방식에 대해 체계적인 규제체계를 확립하고 실효적인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불법 콘텐츠 신고 및 삭제와 이용자 권리 보호를 균형 있게 추진하고 있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IV. 한국에서 유튜브에 대한 대응 : 언론중재법의 확대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1. 국회 제출 언론중재법 개정 법안 검토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모두 23건이다. 그 가운데 2021년 6월 22일까지 발의된 1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통합·조정하여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였다.

법안은 주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비롯하여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구성이나 정정보도 등의 효과를 제고하는 내용이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언론중재위원회의 상한 확대와 위원 추천 등의 규정 보완, 둘째, 기사의 열람차단에 대한 정의 신설과 함께 인터넷신문이나 인터넷뉴스 서비스의 주요한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하거나 사생활의 핵심 영역을 침해하는 경우 피해자의 기사 열람차단청구, 셋째, 인터넷뉴스 서비스사업자와 인터넷신문사업자로 하여금 정정보도 등의 표시와 내용을 쉽게 검색 및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등을 할 의무 신설, 넷째, 법원은 언론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이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었던 법안의 내용은 언론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었는데 언론 본연의 기능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언론개혁의 당위성과 함께 많은 여론의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조작보도’, ‘명백한 고의’, ‘중과실’ 등 개념의 주관성으로 인한 명확성 원칙 위반 논란, 명예훼손죄와 정정보도청구권, 반론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도

입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만을 남긴 채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법안은 폐기되었다.

이후에도 21대 국회에서 6개의 법안이 더 제출되었는데, 김승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주목할 만하다. 언론사의 활동 영역이 전통적인 방송, 신문, 뉴스통신을 넘어 뉴미디어로 확대되고 있어 언론의 정의를 확대하여 유튜브 등 언론사가 운영하는 뉴미디어 채널도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 대상의 범주에 포함하자는 내용의 법안이었다.¹⁷⁾ 현행법은 언론을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으로 한정하고 있지만,¹⁸⁾ 언론의 범주에 언론사가 보도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새로운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서 실효성 있는 침해 구제 제도를 확립하려는 것이었다.

개정안은 언론의 정의 규정에 그 밖에 언론사가 보도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¹⁹⁾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유튜브 등을 통한 언론사의 보도도 언론의 대상에 포함하고자 하였다.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통한 뉴스 형태의 영상에 대해 피해구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동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언론사가 운영하는 뉴미디어 채널이 새로운 보도 수단으로 활용되고

17)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제2119177호)

18)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언론”이란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①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보도 또는 매개(이하 “언론보도등”이라 한다)로 인한 분쟁의 조정·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8조(조정신청) ① 이 법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등은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통한 인격권 침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면서 22대 국회에서도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 확립을 위해 법안이 발의되었다.

21대 국회에서 언론의 정의를 확대한 법안²⁰⁾의 형태로 발의한 것과는 달리, 22대 국회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의 분쟁 조정·중재의 대상이 되는 언론보도 등의 범주에 언론사가 보도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를 포함한 법안²¹⁾의 형태로 발의하였다.

언론중재위원회는 2022년 8월부터 언론사의 유튜브 형식의 보도 등을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대상으로 하여 왔지만, 언론사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보도를 조정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현행법상 해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정보 중 언론사가 보도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를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제공하는 정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조정·심의 대상에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정보의 ‘보도의 목적’ 여부

20)

| 현행 | 개정안 |
|---|--|
| ○ 언론의 정의 -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u>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u> | ○ 언론의 정의 -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u>뉴스통신, 인터넷신문 및 그 밖에 언론사가 보도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정보</u> |

21)

| 현행 | 개정안 |
|--|---|
| 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① 언론 등의 보도 또는 매개(이하 “언론보도등”이라 한다)로 인한 분쟁의 조정·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 ⑪ (생략) | 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① -----매개(뉴스통신, 인터넷신문 및 그 밖에 언론사가 보도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언론보도등”이라 한다) ----- ② ~ ⑪ (현행과 같음) |

에 따라 소관 기관 결정되는데, 현행법은 보도²²⁾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업무 범위와 관련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2. 유튜브에 대한 언론중재법의 적용 가능성

가. 유튜브는 언론 개념에 포섭될 수 있는가?

현행법상 언론은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으로 정의된다. 유튜브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대상인 ‘언론의 보도’에 제외되어 있다. 언론으로서 유튜브를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인터넷매체는 지속적인 발전 과정에 있고, 유튜브의 구체적 발현 형태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튜브 1인 방송이 급증하고 청소년 유해 정보나 불법 정보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국회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서비스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해 온 것이고, 유튜브를 인터넷 동영상 사업자 역무로 편입시켜 일반 방송사업자에 준하는 의무를 부여하도록 방송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바도 있었다(권형돈, 2019).

유튜브를 비롯한 모든 융합 미디어로 확장하여 방송의 규제 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도 있지만,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전통적인 방송 이론과 언론의 개념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더구나 유튜브는 뉴스 소비의 핵심 플랫폼으로 확고히 자리를 잡았으며,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경향은 더 두드러진다. 더구나 유튜브는 시사나 정치 채널 콘텐츠로 사회적 의제를 형성하고 공적 토론을 자극하는 등 새로운 저널리즘의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다(권형돈, 2019, 16쪽).

22) 「방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4. “보도”라 함은 국내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전반에 관하여 시사적인 취재보도·논평·해설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 제21조는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매체로서의 방송과 신문의 특성을 인식할 수 있게 하고, 헌법상 방송의 개념도 그러한 관점에서 추론할 수 있다. 방송법상 방송의 개념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지만, 개별법의 정의가 헌법상 언론 매체의 개념과 반드시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권형돈, 2019).

헌법상 방송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사회적 영역에서 기술 변화에 따라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²³⁾ 소셜미디어나 유튜브 등 새로운 미디어가 전통적인 매체를 대체해 가는 상황에서 언론의 자유의 기본권이 규범력 유지를 위해서는 언론을 이미 도입된 기술에만 근거하여 한정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²⁴⁾

변화하는 미래에도 언론의 자유가 그 규범적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기술에 국한해서는 기본권을 보호할 수 없다. 새로운 기술적 가능성의 토대에서도 언론의 기능이 충족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방식만을 따를 경우 언론의 자유의 기본권은 형해화될 수 있다(권형돈, 2019, 17쪽).

유튜브가 국민의 의사형성에 기여하는 경우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수단으로서 언론 매체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 이 경우 유튜브는 주파수의 희소성이 사라진 정보화 사회에서 공공의 의사형성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유사방송 서비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고, 그러한 의미에서 의사형성에 기여하는 언론 매체로서 기본권적 효력이 미치게 된다. 유튜브의 다양한 기능 중 보도 기능은 전통적 방송의 전송방식이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 전송하는 것으로 방송이 가진 대중 선동력, 영향력의 광범성 및 현실성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23) BVerfGE 74, 297, 350. 현행법은 언론을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으로 정의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대상으로 언론의 보도를 규정하고 있다.

24) BVerfGE 74, 297, 350.

방송 개념에 대한 헌법적 판단 기준은 공공의 의사형성에 대한 매체로서의 특성이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 미국이나 유럽연합에서도 방송시장을 세분화하면서 뉴미디어와 전통적인 방송에 대해 이중적 규제체도를 유지하여 오고 있다. 미디어 서비스가 선형인지 비선형인지에 따라 구분하여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선형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였다. 시장에서 같이 행동하고 경쟁하는 동안에는 동일한 규제, 다르게 행동하는 경우 차별적 규제를 적용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권형돈, 2019, 9쪽). 방송법상 방송과 동일한 규제에 갈 것인지의 문제는 미디어가 가진 특성을 고려한 입법자의 형성 영역에 해당한다.

나. 언론중재법 적용을 위한 구체적 입법방안

전통적 미디어는 사회 현안과 시사 정보에 대해 게이트 키핑을 통해 재구성하여 뉴스의 형태로 보도하고 해설하는 과정을 거친다. 유튜브는 전통적인 미디어보다 더 많이 이용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서비스 이용이 급증하고 있지만 미디어의 상당수는 모니터링 또는 검증되지 않은 콘텐츠를 무분별하게 유통하고 있다(이도연·김동윤·김현, 2022, 270쪽).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지만 유튜브를 방송과 통신 어떠한 범주에 포함할지, 구체적 규제 수단은 무엇으로 할지 여전히 고민이다.

유튜브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플랫폼 내에서 혐오 표현, 폭력적 콘텐츠 등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차단 조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콘텐츠에 대해 일일이 조치를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유튜브가 사실상 언론의 보도 기능을 수행하면서 인격권을 침해하고 자유로운 의사형성을 왜곡하는 프로그램을 제작·전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규제의 바깥 영역에 방치할 수 없다고 본다(박아란, 2021, 17-18쪽).²⁵⁾

25) 유튜브는 언론사 계정이나 채널을 통해 기사를 발행한다 하더라도 신문법상 인터넷 신문이나 인터넷뉴스서비스에 해당하지 않으며 등록도 되어 있지 않다. 특히 구글의 유튜브는 해외 플랫폼사업자로 현행법상 등록 대상도 아니다. 방송법상

사회 현안과 시사 정보를 이제 유튜브 플랫폼을 통해 소비할 수 있게 되었고, ‘유튜브 저널리즘’이라는 용어는 이러한 현상을 표현하는 결과물이다. 유튜브를 비롯한 다양한 미디어가 플랫폼에서 대중들에게 뉴스를 제공하는 언론 역할을 한다. 대중들은 온라인에서 개인 유튜브가 이미 언론의 기능을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언론사와 유튜브의 input 기능과 output 기능을 누가 수행하는지도 불분명하고 상호 간의 인용 보도를 통하여 조작과 왜곡이 일어난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유튜브가 공론장의 경계에 들어서게 한 기성 언론의 책임이 크다고 본다. 실무적으로는 유튜브와 같이 언론사가 생산하는 다양한 방식의 콘텐츠를 ‘언론보도’로 보고 침해구제의 대상으로 하는 판례도 나오고 있다.

2023년 선고된 유튜브 관련 판결은 총 15건이었는데 손해배상을 인용한 일부 판결에서 법원은 당해 채널이 유튜브의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파력을 고려하여 이에 상응하는 진실 확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²⁶⁾ 또한 법원은 유튜브 채널에서 게재한 언론보도에 대하여 정정보도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²⁷⁾에서는 정정보도문의 형식을 기존 방송사를 대상으로 한 정정보도문 형식과 거의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을 언론사와 같은 지위에 놓고 언론보도의 진실성에 관한 법리를 적용하여 정정보도 인용 또는 기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유튜브 채널에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 적시로 원고를 비하하였다는 이유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유튜브를 언론 매체로 보면서 자유로운 의견 표명과 공개 토론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잘못되거나 과장된 표현은 불가피한데, 법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한계를 명백히 넘는 표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²⁸⁾

방송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언론중재법상 언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결국 언론사의 유튜브나 소셜미디어 채널에 대해 독립적으로 중재나 조정을 시행할 수는 없다고 본다.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10.11. 선고 2021가합575651 판결

27) 서울고등법원 2019나2043482 정정보도청구 등

28) 서울지방법원 2023.10.11. 선고 2021가합575651 판결; 대법원 2018.10.30. 선고

법규가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상당수 유튜브 관련 판결에서 언론사가 발행한 기사와 유튜브나 소셜미디어상의 보도 내용을 사실상 같은 언론의 범주로 보며 판결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은 유튜브를 통신심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정보 중 언론사가 ‘보도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모든 유튜브 방송을 대상으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대상으로 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및 분쟁업무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 업무가 중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 대상으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중 제공 주체가 ‘언론’이며, 그 대상도 ‘보도’로 한정하고 있어 심의를 통해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정보를 삭제·차단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기능과, 발생한 피해에 대해 정정·반론보도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은 그 기능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다고 본다.

물론 모든 유튜브 미디어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독일의 경우 뉴미디어 규제에 대해서는 양적 하한선을 설정해서 접속 서비스 수를 대상으로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고, 벨기에의 경우에는 시청자 수보다 잠재적 시청 가능성을 고려하여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중시하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발행인, 주소, 연락처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유튜브 채널 사용자에 대한 등록 의무가 부과된다(이수중, 2024).²⁹⁾ 따라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유튜브 채널을 모두 언론 중재 대상으로 하는 것도 곤란하다. 중요한 것은 ‘시사 보도 논평’

2014다61654 판결

29) 유튜브 채널에 대해 언론중재법을 적용할 때 뉴스콘텐츠 생산자를 특정하기 위한 간기의무(刊記義務) 등 조정 절차적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선결과제가 있다. 독일의 경우 멀티미디어 관련 법제에서 텔레미디어 규제를 위해 “저널리즘적-편집을 거쳐 제작된 텔레미디어”라는 개념을 창안하여 저널리즘 성격을 지닌 다양한 융합 매체에 대해 저널리즘 원칙과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을 주로 하는, 그래서 이용자들이 ‘언론’으로 인식하는 유튜브 채널을 새롭게 정의하고 조정·중재의 대상으로 분류하는 작업이다. 단순히 ‘시사 보도 논평을 주로 하는 유튜브 채널’이라고 정의하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국회 개정 법안의 내용처럼 언론이 제공하는 유튜브 보도 기능을 우선적으로 언론중재의 조정·중재 대상으로 하고, 이후에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본다. 언론중재법을 포함한 미디어 법 개정의 경우 무엇보다도 민주적 절차에 따른 국회의 합의 과정이 중요하다. 입법 과정에서 신뢰를 잃어 언론의 공익성과 객관성을 훼손시키는 법규범은 그것이 통과되어도 규범력을 발휘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³⁰⁾

3. 유튜브 적용을 위한 법 개정 시 선결과제

유튜브 미디어의 저널리즘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만큼 향후 언론중재법 개정은 불가피하다. 한국 사회에서 각종 비 소송적인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논란이 있지만, 현대적인 조정·중재 기구에 의한 비소송적 분쟁 해결 방법은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다. 다른 조정·중재 기구와는 달리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 보호라는 두 법의 사이의 균형을 도모해 낸다(성낙인, 2021, 23쪽).

하지만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언론에 대한 법적 통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면서 언론의 자유의 본질이 외면 받는 경향도 있다(심석태, 2016, 21-23쪽). 이는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다. 유튜브 콘텐츠 일반에 대한 규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과중한 정치적

30) 국회의 입법검토안은 법률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개정안의 ‘뉴스통신, 인터넷신문 및 그 밖에 언론사’를 법 제2조제12호에 정의된 ‘언론사’로 수정하고, ‘보도’가 언론중재법 정의상 ‘언론’의 행위이고 언론의 기사를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은 언론에 포함되지 않는 ‘인터넷뉴스서비스’임을 감안할 때, 개정안의 위치를 매개에서 보도로 이동하고 ‘보도를 목적으로’를 삭제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1826호)에 대한 검토·보고 (2024.8).

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 현재 언론관계법은 디지털 시대 방송통신융합 현상을 반영하고 있지만 계층 구분이 적용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콘텐츠와 플랫폼 규제를 차별화하는데 부족하다. 방송과 통신, 콘텐츠와 네트워크의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다양한 미디어 개념이 재정의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평적 규제체계의 신속한 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결국 언론중재법만의 개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방송법 등 미디어법 전반에 대한 조정과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언론관계법 전체에 대한 고려를 통해 정교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이다.

21대 국회에서 현행 언론중재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언론위원회’로 바꾸고, 침해행위 구제신청 시 언론위원회가 침해행위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여 시정명령 내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된 바 있었다. 이와 함께 언론위원회가 새롭게 부여된 침해행위에 관한 조사 및 구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심판부’를 추가하여 위원의 정수를 현재 90명에서 120명으로 늘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자 하였다. 언론중재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을 확대하고자 한 이유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심의가 공정성을 확보해 왔다는 평가와 함께 피해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보호하려는 의도 등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민간기구로서 언론중재위원회의 독립성과 함께 당사자의 화해와 수용을 기반으로 하는 기존의 조정·중재 제도는 언론중재가 가지고 있는 제도적 특징이고 장점이라고 본다. 악법으로 평가받았던 언론기본법의 제정으로 언론중재제도가 도입되었지만, 법의 폐지 이후에도 언론중재위원회는 제도로서 존치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아오고 있다.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을 통한 뉴스 콘텐츠의 생산과 소비가 늘어나면서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의 변화도 필요하다. 다만, 언론중재위원회가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유튜브 미디어에 대한 조정·화해를 시도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V. 마무리

자유로운 의사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 기대한 인터넷 공간이 혐오와 허위 정보의 바다라는 오명도 함께 안고 있다. 산업화로 자연이 훼손되고 지구 환경이 위협받게 되었듯이, 감시자본주의와 새로운 도구주의 권력은 인간의 본성을 파괴하고 성장하면서 인류 전체를 위협에 빠뜨릴 수 있다(Zuboff, 2021).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모바일 환경 변화로 누구나 어디서든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게 되어 인터넷은 오프라인보다 오히려 막강한 정치적·사회적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이성엽, 2024, 5쪽). 하지만 물리적 실체가 없는 디지털 환경과 인터넷 접근성 때문에 인터넷 공간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거나 완화되어 적용해 왔다.

인터넷을 통한 새로운 공간개념의 형성으로 소셜미디어나 유튜브 등은 진정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여론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해왔다. 그러나 오늘날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는 혐오 표현, 거짓 정보 등으로 왜곡되거나 조작되어 침해받고 있다. 허위 정보 인지 혐오 표현인지 법적인 판단도 어렵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우려로 처벌도 쉽지 않다. 하지만 소셜미디어나 유튜브 등이 민주사회의 불가결한 요소인 의사 표현의 자유를 악용하고 언론 매체 일반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켜 건전한 공론장의 성립을 위협하기 시작했다는 데는 이론이 없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도 유튜브 등 새로운 미디어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는 이들의 책임감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맞물려 있어 법적 규제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 관계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독일 「네트워크법집행법」이 발효될 때 인터넷의 자유가 침해된 ‘암흑의 날’이라는 비판과 함께 많은 법학자와 각계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와 법의 위헌성을 주장했다.³¹⁾ ‘국경 없는 기자회견’은 ‘언론의 자유를

31) Steiner, “Facebook-Gesetz”, heise online, 2018. 1. 1.

과도하게 침해하는' '치욕스러운' 법이라고 논평한 바 있다. 실제로 법이 실행된 이후 그러한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유튜브 콘텐츠로 인격권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올바른 여론 형성이 위협을 받고 있다.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는 자율규제의 영역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언론사 제공 유튜브 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속하게 마련할 필요성과 함께 관련법 전반에 대해 기술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입법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변화한 플랫폼과 뉴스 이용에 맞게 그 해법도 달라져야 한다.

■ 참고 문헌

- 곽정호 (2023). EU 디지털서비스법과 플랫폼 규제. <지역정보화>, 제138호, 66-71.
- 권형돈 (2019). 헌법상 방송개념과 OTT서비스의 방송법적 규제의 정당성. <언론과 법>, 제18권 제1호, 1-36.
- 권형돈 (2020).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와 그 규제법리 - 혐오표현·거짓정보에 대한 독일의 대응을 중심으로. <사법>, 통권 51호, 3-34.
- 김익현 (2022). EU발 디지털서비스법 강풍 전 세계로 확대된다. <신문과 방송>, 제619호, 20-23.
- 김주용 (2025). 유튜브 뉴스 콘텐츠에 대한 언론중재법 적용 방안 연구-적용의 저널리즘적 근거와 법적 정당성을 중심으로-. <언론과 법>, 제24권 제1호, 43-87.
- 김현수·전성호 (2020).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안(Digital Services Act)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KISDI Premium Report>, 제20권 제11호, 1-33.
- 문재완 (2012). SNS 규제와 표현의 자유. <한국언론학회 심포지움 및 세미나 발표문>, 123-149.
- 박아란 (2021). 유튜브 등 1인 미디어와 인격권 보호. <2021년도 언론중재위원회 토론회>, 2-21.
- 박아란 (2023). 미국의 소셜미디어 규제 논란과 「통신품위법」 제230조 개정 논의. <언론중재>, 통권 169호, 50-57.
- 박아란 (2024). 미디어 자유 개념의 확장과 재구성. <한국언론학회 2024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 설진아·전승 (2022). 탈진실시대 언론의 소셜미디어 인용 보도에 관한 연구: 검찰개혁 보도 사례를 중심으로. <언론과 법>, 제21권 제2호, 47-83.
- 성낙인 (2021). 언론조정중재와 언론피해구제: 40년의 변화와 성과. <세계헌법연구>, 제27권 3호, 1-36.
- 심석태 (2016). <사례와 쟁점으로 본 언론법의 이해>. 컬처북.
- 심영섭 (2024).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공동규제: 독일에서의 '규제된 자율 규제' 시사점을 중심으로. <미디어와 인격권>, 제10권 제1호, 37-72.

- 양선희 (2020). 유튜브 저널리즘의 시대, 전통적 저널리즘의 대응현황과 과제. <사회과학연구>, 제31권 제1호, 251-254.
- 이권일 (2024). 독일에서의 규제 논의의 현황과 과제. <공법학연구>, 제25권 제2호, 3-30.
- 이도연·김동윤·김현 (2022). 이용자는 개인 유튜브 채널을 언론으로 인식하는가?: 가짜뉴스 확산 경로인식, 미디어 신뢰도, 뉴스 소비 행태 유형별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과학논집>, 제53권 제1호, 269-288.
- 이부하 (2018). 디지털 시대에 의사표현의 왜곡과 표현의 자유의 한계: 독일 헌법이론을 겸하여 고찰하며. <법학논문집>, 42권 3호, 45-71.
- 이성엽 (2024). EU의 디지털서비스법(EU Digital Service Act)의 시사점. <법무부>, 5-9.
- 이성엽 (2025). 유튜브 규제 어디까지 가능할까. <관훈저널>, 통권 174호, 62-63.
- 이수종 (2024). 독일 미디어국가협약(MStV)상 반론보도 청구제도에 관한 연구. <미디어와 인격권>, 제10권 제2호, 81-136.
- 이승선 (2025). 디지털 시대의 언론의 범위와 실효적 언론피해구제 방안. <언론중재법 제정 20주년 기념 언론중재위원회·한국언론법학회 공동 학술세미나 발제문>, 41-70.
- 이유진 (2023). 네트워크집행법 대체하는 디지털서비스법, 더 이상 책임 피할 수 없는 글로벌 플랫폼. <신문과 방송>, 통권 632호, 101-104.
- 임지봉 (2006). 명백·현존하는 위협의 원칙과 표현의 자유. <공법연구>, 제34권 제4호 1권, 167-194.
- 임한솔·정창원 (2020). 국내외 인터넷 개인방송 규제현황 및 규제 방향성 제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0권 제2호, 248-264.
- 장철준 (2025). 언론중재: 무엇을 중재할 것인가?. <언론중재법 제정 20주년 기념 언론중재위원회·한국언론법학회 공동학술세미나 토론문>, 76-79.
- 주보프, 쇼사나 (2021). <감시 자본주의 시대>. 김보영 옮김. 문학사상.
- 최서지 (2023). 미국의 온라인 콘텐츠 규제 입법동향. <최신 외국입법정보>, 통권 232호, 1-2.
- 한국언론진흥재단 (2025). 온라인 뉴스 플랫폼 지각변동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5>로 본 한국의 디지털 뉴스 지형. <미디어 서베이>, 제11권 제3호.

- 황성기 (2017). OTT 서비스 규제기준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제34집 제 1호, 1-25.
- Katsch, M. E. (1989). *The first amendment and technological change: The new media have a message.*
- Steiner (2018, January 1) Facebook-Gesetz, *heise online*. <https://www.heise.de/news/Facebook-Gesetz-NetzDG-macht-Soziale-Netze-zu-Richtern-ueber-Hate-Speech-3929110.html>

■ **ABSTRACT**

Expanding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Press Arbitration Act Amid the Rise of Social and Individual Media

- Emphasis on YouTube Journalism -

Kwon, Hyung-Dun
Professor, Kongju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limitations of current response systems in addressing personality rights violations by “YouTube journalism” and explores the applicability of the Press Arbitration Act as a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 YouTube, which represents social media and one-person media, is changing the world. As the influence of YouTube and social media expands, they are replacing and dominating traditional media, such as newspapers and television. With the transition to a mobile-centric media environment, YouTube news has rapidly grown, giving rise to the term “YouTube journalism.” Given the growing media influence and social impact of YouTube, discussions have emerged regarding the necessity of including it within the scope of regulation. Although some argue that regulating YouTube raises constitutional issues related to freedom of expression, many believe legal regulation is necessary, as YouTube performs actual journalistic functions, such as shaping public agendas and stimulating public discourse. In Korean society, the role and function of press arbitration remain controversial. However, the non-litigious dispute resolution methods of the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PAC)—a modernized mediation and arbitration body—have gained significant support. Unlike other arbitration institutions, the PAC aims to balance two legal interests: the freedom of the press and the protection of individual personality rights. The Press Arbitration Act must be revised to actively reflect changes in the media environment and ensure the practical effectiveness of remedies for harm. Many countries are also increasingly transitioning from voluntary self-regulation to mandatory measures for platform operators, such as YouTube and social media outlets. These legislative trends offer meaningful implications for Korea’s legal framework regarding YouTube regulation. In conclusion, the study emphasizes the need to examine what broadcasting and the press constitutionally mean in the age of digital convergence and actively incorporate the changes in media phenomena occurring within the social sphere in the legislative process.

Keywords: Social Media, YouTube Journalism, EU Digital Services Act, German Network Act, Communications Decency Act, Press Arbitration Act

[논문투고일 2025. 6. 22. 논문수정일 2025. 7. 17. 게재확정일 2025. 7. 21.]